

입 · 퇴 소 자 관 리 규 정

(2 0 2 4 년)

사업장명 : 사회복지법인 고성평화의집 효경의집
소 재 지 :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268-92
전화번호 : 055-673-6637
사업종류 : 사회복지 서비스업
시설종류 : 노인요양시설
대 표 자 : 조명숙
시 설 장 : 장형욱

입 · 퇴 소 자 관 리 규 정

1. 입 소 대 상

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가능자
- (2)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시·군·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를 희망하는 자.

2. 입 소 정 원

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 60명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모 집 방 법

본 시설의 모집방법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.

4. 입 소 절 차

입소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- (1) 보호(본인)의무자가 입소신청서
- (2) 입소대상자 건강검진진단
- (3) 입소
- (4) 본인에게 입소사유 등 통보

5. 구 비 서 류

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- (1) 입소 계약서 1부.
- (2)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,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.
- (3) 입소자 증명사진 1부.

- (4) 입소자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
(보호자 - 환자와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)
- (5) 기초생활수급자 - 입소의뢰서 1부.
- (6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.
- (7) 전원연계기록지 1부. (요양시설이용자)

6. 입 소 계 약 에 관 한 사 항

(1) 계약기간

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. 단, 장기요양 인정서의 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(2) 계약의 목적

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에게 24시간 보호와 요양, 치료 재활훈련을 받으며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(3) 월 이용료

노인요양서비스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한다.

§. 2024년도 수가 계산표

(30일 이용기준)

구분		식재료비	본인부담금		합계	비고
1등급	1일 수가 : 84,240원	210,000원	20%	505,440원	715,440원	
			12%	303,260원	513,260원	
			8%	202,170원	412,170원	
2등급	1일 수가 : 78,150원		20%	468,900원	678,900원	
			12%	281,340원	491,340원	
			8%	187,560원	397,560원	
3등급	1일 수가 : 73,800원		20%	442,800원	652,800원	
			12%	265,680원	475,680원	
			8%	177,120원	387,120원	
※ 감경대상자는 감액 비율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						

(4) 기타 비용 부담액

- ① 비급여 비용으로 당해 연도에 책정된 이미용비,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등이 있다.
- ②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진료 후 다음 달 명세서에 청구하여 대납한다.

(5)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

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에 어르신에 필요한 서비스와 의문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 및 요구할 수 있고 어르신의 심신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그에 따라 행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.

(6) 계약의 해지

- ①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시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시
- ③ 2회 이상의 이용료 체납으로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
- ④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 입소자(보호자)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유지한다.
-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⑦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

(7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① 본인부담금

노인요양서비스 수가 산정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금액을 공지 후 변경된 월부터 적용한다.

② 식재료비

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용의 상승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금액을 공지 후 변경된 월부터 적용한다.

(8) 특별침실제공

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전염병 또는 감염병, 임종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파악된 수급자에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7. 퇴 소

- (1)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,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. 다만,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 (2)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,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시킬 수 있다.

8. 시설물 배상

- (1)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(보호자)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(2)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(보호자)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9. 배상책임 및 면책

- (1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경의집은 이용자(보호자)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-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④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(2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효경의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- ②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④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